
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
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준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(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